

개인형 퇴직연금(IRP) 세액공제 안내

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6조의 2 개정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“개인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가입이 가능”하게 되어 기존 개인연금저축 외에 추가로 IRP 가입을 통해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개인 자영업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

<기 준>

(연금저축납입액, 연400만원) 중 작은 값 X 12% 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자 15%)

<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후>

(연금저축납입액, 연400만원) 중 작은 값 + 개인형 퇴직연금(IRP) ≤ 연 700만원

X 12%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 15%)

※ IRP 가입 방법등은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.